

『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함.

3. 주요내용

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(안 제2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개정('09.4.1.)에 따라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

규모별 기준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, 구미시의 19세 이상 주민이 구미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를 '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'으로 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안 제2조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.

○ 검토결과

주민이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「지방자치법」에서는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본 조례안에서 '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'은 2014년 12월말 기준, 19세 이상 총 주민 수 323,018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,500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 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